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2 Serial No.122 2013.4. 93~108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2.09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가정헌법' 분석과 발전방안

: 서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amily Constitu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Making Family Constitution' Project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 With a Focus 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숭의여자대학교
강 사 이 은 주*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부 교 수 전 미 경**
Soongeui Women's College
Lecturer : Lee, Eun-J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
Associate Professor : Jun, Mi-Kyung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unctionality and healthiness of family rules through a relation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 frequency by sub-family system and the content properties shown in the 'family constitution', It also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degree of healthy family elements and the family subsystem rules and prepare the project development plans. As a result, it was a found that there were many dysfunctional rules, and healthiness was not satisfied. Project development plans include specific project plans, delivery systems, an orientation for practitioners, the necessity of evaluation and feedback, family health diagnosis, association with other project areas, and small scale operations.

▲주요어(Key Words) : 가정헌법(family constitution), 가족규칙(family rules),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건강가정요소(healthy family element)

Ⅰ. 서 론

가족은 그 어떤 집단보다 친밀한 관계가 기대되지만, 성별과 세대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안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그 자체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하며, 가족의 건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적 가족규칙은 갈등과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가족규칙(family rules)이란 시간에 걸쳐 가족행동을 제한

* 주 저 자 : 이은주 (E-mail : ejrqo94@nate.com)
** 교신저자 : 전미경 (E-mail : mkjun@dongguk.edu)

하는 관계상의 합의로서, 조직화되고 반복적인 행동유형을 말한다(Nichols & Schwartz, 2002). 가족이 공유하는 규범이나 가치관의 기제라 할 수 있는 가족규칙은 가족원의 생활태도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성행동, 행동규범, 의사소통 방식, 감정표현 방식 등 가족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다(Jung et a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규칙은 개별 가족의 특성과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규칙은 기능적인 규칙과 역기능적인 규칙으로 구분된다. 기능적인 가족규칙은 가족원 간의 논의와 협의의 결과이며 변화의 가능성 역시 충분히 열려있는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은 규칙에 융통성이 없으며 가족의 맥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가족원의 성장을 방해한다(Yoo et al, 2004: 263-264). 원가족의 이러한 규칙들은 세대를 통해서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기에, 다수의 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은 가족 내 가족규칙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년 3개 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2012년에는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 단위로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4-6).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2009년 7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법무부와의 협약을 시발점으로 현재까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의 일차적 사업 목표는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 또한 기능적인 가족규칙 제정 및 이행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높은 이혼율과 가족관계 및 가족 기능의 약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가정 세우기를 위한 범국민적 건강가정 캠페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2).

'가정헌법'은 "가족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약속"으로 정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가정헌법'은 가족구성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켜야할 약속・원칙, 추구하는 목표・가치를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7-8). '가정헌법'은 명시적 규칙(explicit rules)이라 할 수 있으며, 명시적 규칙은 가족이 인정하고 인식하는 신념으로 가족규칙이 변경되기 전까지 가족생활에 상당한 강제력을 띄면서 가족원의 행동을 규제하는 특성이 있다(Yoo et al., 2004: 256).

'가정헌법'의 내용 구성은 건강가족의 특성인 건강가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핵심가치 공유', '감사와 애정의 표현', '긍정적 커뮤니케이션', '함께 시간보내기', '봉사활동', '스트레스와 위기대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Yoo(2004)의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건강가정척도' 연구의 건강가정의 하위 요인인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 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와 대부분 일치한다. 즉,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가족규칙 제정을 통해서 개별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칙의 구성은 건강가정을 구성하는 내용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현재 법무부 홈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등록된 '가정헌법'의 누적 건수는 2,080여 건으로 가족규칙은 꾸준히 제정되고 있고 매해 우수 '가정헌법' 및 사업을 많이 수행한 센터를 시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현황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진 가족규칙에 대한 기능성 및 건강성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의 평가는 대부분 가족의 건강성 향상 보다는 사업 수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센터에서의 사업을 통해 개별 가족원의 가정 건강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Jeong, Park, & Song, 2011). 또한 기존의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사업 운영 현황과 이용실태, 사업 평가, 발전 방향, 정책 제안 등(Song & Jeong, 2008; Lee & Yoon, 2009; Park & Yoon, 2010; Yang & Kim, 2010; Song, Kim, & Cho, 2012; Cha, 2012), 개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족규칙은 가족 건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사업의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헌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방법의 적절성과 사업수행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사업발전의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가정헌법' 분석을 통해서 가족규칙의 기능적 특성과 건강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가족건강성 증진이 주된 사업목표인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실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헌법

가정헌법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켜야할 약속・원칙, 추구하는 목표・가치를 만들어 내고(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7-8)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정헌법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고 지켜 나가야하는 가족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2010년 보건복지부로 직제 개정되면서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성부로 이관되어 여성가족부로 직제 개정)와 법무부가 2009년 7월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산하 기관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주요 시행 기관이 되었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약 2,080여 건의 '가정헌법'이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 '가정헌법 만들기' 진행절차는 건강가정교육・문화 프로그램에서 가족화합을 위해 작성하는 '가정 사명서' 대신 '가정헌법'이 활용되며, 가정헌법 매뉴얼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이후 법무부 인증 절차를 거쳐서 액자로 제작되어 지역 센터로 발송되고 가족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진행 목표는 법무부 협약에 의한 법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포함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공동체 문화 창조'로 건강가정사업의 목적인 가정건강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추진 배경은 '튼튼한 가정 세우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새로운 가족문화', '가정교육 되살리기' 등 가족의 건강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2009: 2).

가정헌법의 구성은 크게 가정헌법의 '제목', '목적',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제목'은 각 가족만의 특성이 담긴 고유한 가정헌법의 이름을 의미하고 '목적'은 각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정헌법을 만드는 목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은 실질적으로 실천해야할 가정헌법의 세부조항이다. 세부조항은 건강가족의 특성인 건강가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헌법 만들기' 내용 구성의 실제는 <Table 1>과 같다.

2. 가족규칙과 가족건강성

가족을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마다 지배하는 규칙이 다르고 그것에 의해 가족이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족규칙은 안정된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원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가족생활을 이끌어 가는 가족 성원들의 역할, 활동, 행동 등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상호간의 기대를 의미한다(Song, 1998).

Satir(1988)는 역기능적인 가족은 역기능적인 규칙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성숙을 저해하는 불문의 규칙을 일깨워 이를 수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가족규칙이 모호하거나 경직된 경우 가족원 간에 부정적 상호작용 패턴의 연속

Table 1. Making 'Family Constitution', Example of the Contents Configuration (HEADQUARTERS FOR HEALTHY FAMILY CENTERS, 2009)

Subject	Make a unique 'family constitution' title that contains each family's own characteristics.	
Purpose	Write the purpose of creating a 'family constitution'.	
Chapter 1	'Family happy, let us together' - Common written content	
	1. Family core values	Include what a family thinks important and hopes to practice together.
	2. Appreciation and expressions of affection	Include what a family should practice to consider and understand each other.
	3. Positive communication	Include what a family should practice for smooth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4. Together spend time	Include how a family should have time to spend together for the intimacy among family members.
	5. Volunteer work	Include what a family can do volunteer work together.
	6. Stress and cope crisis	How to solve family problems.
Chapter 2	'Family happy, from me' - Additional written content	
	Mom, dad and child's promise	Include what a family member should try and keep.

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러한 규칙은 건강하지 않은 규칙 혹은 역기능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고 가족원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일관적이지 못한 특징을 갖는다. Belvin(1993)은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가족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기능적인 가족규칙이라고 하였다(Jang, 2004 quote again).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규칙은 전체로서의 가족 뿐 아니라 가족원 개인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규칙으로, 개인과 가족의 생활주기와 성장발달에 따라 변화와 타협이 가능할 만큼 융통성이 있고, 가족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된 규칙이며, 가족원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Kim, 2003; Jung et al, 2007).

최근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족규칙과 가족건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규칙은 원가족의 가족경험과 연계해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Lee(2012)는 원가족의 가족규칙은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현재의 가족 건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의 가족규칙 중 성과 성역할에 관한 규칙을 강하게 지각하는 기혼여성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 Hyun(2012)은 원가족에서 경험하고 학습된 가족규칙이 개인의 심리적 변인인 일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외, 다양한 선행연구(Cho, 2005; Kim, 2007; Park, 2006; Park, 2009)에서 원가족의 가족규칙은 부부갈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은 '가족의 청사진을 만드는 토대'로, 개인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사건을 새로이 만든 자신의 가족에서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으며(Satir, 1964), 규칙에는 지침, 동기, 한계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사회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부모들은 그들이 배운 것과 친숙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어떤 규칙들은 세대를 통해서 지속된다(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2000). 이러한 맥락에서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으로 이룬 현재의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Havestsdt et al, 1985). 즉, 가족규칙은 원가족 뿐만 아니라 생식가족의 건강성과 상호작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헌법'에 나타난 가족규칙의 기능성과 건강성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3. 건강가정요소

건강가족(정)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나가는 체계이다(Yoo, 2001). 또한 '건강한 가족'이란 긍정적인 가족 정체감을 형성하며 만족스럽고 충족적인 자원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가족집단과 성원 모두의 발전을 촉진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가족을 말한다(Stinnett, Chesser, & Defrain, 1979).

가족건강성은 가족 내 잠재된 가능성과 발전성, 그리고 가족 외 환경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 등을 의미하는데(Choi & Yoo, 2003), 가족 건강성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을 건강가정요소라고 한다. 건강가정요소는 학자의 견해 혹은 선행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건강가족의 특성을 의미하는데, 건강가정요소는 요소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요소의 본질적인 속성은 연속선상의 개념차원에서 동일시되는 질적 동일성을 갖는다.

건강가정요소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Eo and Yoo (1995)는 건강가정요소를 몰입, 의사소통, 가치관, 적응력의 4개 요소로 분류하였고 Choi and Yoo(2003)는 6개 요소인 정서적지지, 생활시간 공유, 가족원간의 친밀감, 가족 의사소통, 가족 규칙, 가족원의 자율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Yoo, G.(2004)은 공존적 노력, 긍정적 상호작용, 정신적 건강으로 구성된 큰 영역으로서의 건강가정요소를 구분했고 Yoo, Y. (2004)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 즉 총 9개의 건강가정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이후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 운영과 함께 건강가정요소는 가족관계 중심에서 벗어나 대사회적인 영역이 포함되면서 넓은 의미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Jeong et al.(2008)은 건강가정요소를 가족관계 이외에, 가족 다양성, 일-가정, 의식주 생활, 자원관리를 포함하여 9개 요소로 재분류하였고, Cho et al. (2010)는 돌봄, 사회관계망, 직장환경, 지역사회환경을 포함한 10개의 건강가정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건강가정을 이루기 위한 건강가정요소는 가족관계 중심에서 가족-사회통합 형태로 발전・확대되어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정헌법' 분석을 통해 가족규칙의 기능적 특성 및 건강성을 살펴봄으로써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정헌법'의 세부조

항인 가족규칙의 기능적 특성은 가족 하위체계별 규칙의 빈도분포와 고유한 속성 분석을 통해서, 가족규칙의 건강성은 '가정헌법'의 건강가정요소 인식정도 및 하위체계별 규칙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헌법'의 세부조항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규칙이며, 규칙의 내용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가정요소는 무엇이며, 하위체계별 규칙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11년 한 해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등록한 '가정헌법'이다. 가정・학급헌법 홍보자료인 『행복해요 가정헌법, 함께해요 학급헌법』에 따르면 2011년 법무부 법질서 홈페이지에 등록된 가정헌법은 총 2,000여 건이다(법무부, 2011).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기타 기관, 학교, 일반 가족 등에 의해서도 '가정헌법'의 개별적 제정과 등록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서울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등록한 '가정헌법' 만을 분석 자료로 수집하였다. 분석자료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lawnorder.go.kr/)의 가정헌법 만들기 '신청 작품 보기' 게시판에서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검색창에 서울 소재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입력하여 검색하였고, 이때 자료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색창에 글쓴이, 제목, 내용 순으로 각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을 입력하여 '가정헌법'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헌법'을 등록한 센터는 총 11개 센터였으며 '가정헌법'은 총 216건으로 센터에 따라 최소 2건에서 최대 93건이다.

각 센터의 등록 건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이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사업이며, 개별 가족이 작성한 '가정헌법'을 실무자가 법질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하는 업무 부담 혹은 실무자의 사업 의지 정도, 실명 인증용으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부분,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가족은 직접 등록을 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과 무관하지 않다. 연구 자료로 분석된 '가정헌법' 현황은 <Table 2>와 같다.

3. 내용분석

본 연구는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 매뉴얼에 제시된 5개의 건강가정요소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류분석을 위해서 총 9개 건강가정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Yoo(2004)의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건강가정척도'를 준거로 분석하였다. Yoo(2004)의 건강가정요소는 '가정헌법' 내용구성 실제에 제시된 건강가정요소와 같은 맥락인, 즉 대사회적 영역보다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Jeong, Park, & Song, 2011).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9개 건강가정요소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의 표현',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및 목표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안정과 협력', '가족과 사회와의 유대'로 자세한 내용은 <Table 3>과 같다.

'가정헌법'의 내용분석은 자료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가정헌법'에 나타난 의미 있는 표현과 유사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해석을 통해서 공통된 요인을 확인하여 각 범주를 설정하였다. 자료의 범주화는 건강가정요소의 세부내용을 참조한 것이며, 범주화된 가족규칙의 내용은 가족 전체 단위 및 가족 내 하위체계 별로 분석하였다.

'가정헌법' 내용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가족규칙이 어떤 하위체계에 해당하는가에 따른 빈도분포와 가족체계별 규칙의 내용 구성 분석을 통한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가족체계 범주는 가족단위의 전체성과 역할지위에 따른 관계성 파악을 위해서 가족전체, 조부모, 부부, 부모,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세분화하였고 그에 따른 규칙 분류 방법은 '가정헌법'에 나타난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빠', '엄마' 호칭을 참조하였다. 이때 자녀는 대부분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 하위체계별 규칙의 내용분석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규칙 및 자주 등장하는 단어와 어구를 중심으로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핵심어는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 건강가정요소로 범주화 하였다. 둘째, '가정헌법'의 전체조항을 건강가정요소의 세부내용으로 분류하고 요소별 양적빈도를 도출하여 건강가정요소의 인식정도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하위체계별 규칙과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Table 2. Data Status of 'Family Constitution' Research - Year of 2011

Center	A	B	C	D	E	F	G	H	I	J	K	Total
Number of registration	2	3	4	5	6	7	13	20	29	34	93	216

Table 3. Frame of Reference for Analysis of Healthy Family Elements

	Healthy family element	Details	Examples of 'family constitution' classification
1	respect to family	acception · understanding · respect · support · trust · faith · recognition	• to trust and support each other • to respect each other
2	fellowship	sense of fellowship and solidarity · cooperation · harmony · sharing leisure and hobby	• to get together in the livingroom • to have family bonding time
3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appreciation · intimacy · psychological stability	• to express appreciation • to kiss once a day
4	positive communication	open · democratic · listening · discuss · joke	• to notice when something happens • not to say disregarding words
5	sharing values · goals	view of life · values, religious faith, family rules · respect elders · sound and positive thinking · family tradition	• to think positively • to meet and greet
6	faithful to one's role	fair division of family roles and responsibility · faithful role performance	• to do one's best in every business • to study hard
7	problem solving ability	crisis and adversity management ability	• to count ten when feeling upset • to have time when coming up to an argument
8	financial stability and cooperation	family members' consumer lifestyle · home financial management · preparation for future expenditure	• spend money wisely • to keep a record of spending
9	bond between family and society	volunteer work · socializing with neighbors	• to do family volunteer work more than once a month • to look around neighbors

내용분석에 있어서, 하나의 조항에 두 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도 소은이 말 잘 들어주기"와 같은 조항은 부모와 자녀규칙으로 분류하였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많은 대화하기" 조항은 "함께 하는 시간 갖기(유대의식 요소)"와 "많은 대화하기(긍정적인 의사소통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 가정헌법의 내용 중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말자", "가족이 화를 내서 기분이 상해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참고 들어주기"와 같이 긍정적인 의사소통 요소와 문제해결능력 요소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이때 의사소통 측면이 강조된 경우는 긍정적 의사소통에, 분노를 다루거나 갈등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는 문제해결능력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판단하는 기초인 신뢰성 확보(Lincoln & Guba, 1985)를 위하여, 2인의 연구자가 자료 맥락과 연구의 목적, 연구문제들 간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용분석의 주관성을 최소화하였다. 또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가정헌법'의 세부조항과 분석 준거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2인의 연구자가 1차 분류하고 가족학 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는 2차 과정을 거쳤다.

Ⅳ. 연구결과

1. '가정헌법'의 세부조항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규칙이며, 규칙의 내용 구성은 어떠한가

2011년 서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등록한 '가정헌법'은 총 216건이며, 세부 조항은 총 1,803개로 한 가족의 가정헌법은 평균 8.35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803개의 세부 조항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칙이 1.051개(58.3%)이고 가족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규칙은 752개(41.7%)로, 다시 자녀규칙 576개, 부모 · 아버지 · 어머니규칙 157개, 부부규칙 18개, 조부모 1개로 나뉜다. 가족 하위체계별 규칙의 빈도분포와 내용 구성은 <Table 4>[1]와 같으며 가족전체, 부부, 부모, 자녀에 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전체가 지켜야할 가족규칙은 1,051개(58.3%)로

1)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10% 미만으로 범주화된 건강가정요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는 가족의 하위체계 별 다양한 건강가정요소의 빈도분포 보다는 핵심적 건강가정요소와 규칙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Table 4. Content Structure of 'Family Constitution'

Family system		Healthy family element	Keyword	Frequency (%)	
Family		sharing values · goals	to have a joyful mind · to try best for one's life · to have positive mind · to keep one's word	252 (24.1)	1.051 (58.3)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hugging · loving · kissing	190 (18.0)	
		fellowship	to go for a walk · to exercise · to eat together · to have family meeting · to celebrate anniversary	185 (17.6)	
		respect for family	to respect · care · trust	147 (14.0)	
		positive communication	to peak refined language · to speak gently · to listen carefully · to have conversation more	137 (13.0)	
			etc.	140 (13.3)	
Husband and Wife		respect for family	to speak honorific language · to respect	8 (44.5)	18 (1.0)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to say "I love you" · to hug	6 (33.3)	
			etc.	4 (22.2)	
Parents generation	Parents	positive communication	to listen carefully	24 (35.0)	69 (3.8)
		problem solving ability	not to swear · not to hit · not to get crossed	19 (27.5)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to hug · to say "I love you"	17 (24.5)	
			etc.	9 (13.0)	
	Father	faithful to one's role	to drink less · to stop smoking · to exercise	39 (85.0)	46 (2.5)
		fellowship	to hang out together	5 (11.0)	
			etc.	2 (4.3)	
	Mother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to hug · to say "I love you" · to kiss	18 (43.0)	42 (2.3)
		fellowship	to try for harmonious family · to keep family happiness	14 (33.3)	
		faithful to one's role	to cook tasty food · to make favorite food · healthy food diet	7 (16.6)	
			etc.	3 (7.1)	
Children		sharing values · goal	to be obedient · to greet · to keep go to bedtime · not to be picky eater · to brush teeth well · not to indulge in computer and tv	335 (58.1)	576 (32.0)
		faithful to one's role	to do what one have to do · to do one's best to do homework · to read · to go to private education without complaining	162 (28.1)	
			etc.	79 (13.7)	
Grandparents		sharing values · goal	healthy diet	1 (100)	1 (0.1)
Total				1,803 (100)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가정헌법'의 전체 세부조항에서 이러한 양적 특징은 크게 가족집단 가치의 전체성과 가족집단가치에 대한 개인가치의 종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집단가치의 전체성이란 외부환경과 가족환경의 경계로서 가족 고유의 문화와 특성으로 이루어진 가족가치 규칙을 가족원이 함께 공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다. 높은 빈도의 가족집단가치 규칙은 전체로서의 '가족'이 개인의 태도, 신념, 의지 등의 개인가치 규칙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 공유된 행동, 목표, 방향이 개인의 자율성보다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족의 특성에 있어서 집단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족원 개인의 욕구충족 및 건강한 발달 도모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가 아니므로, 각 가치의 균형 및 조화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가족규칙을 제정할 때 가족집단의 가치와 더불어서 개인의 욕구, 태도, 신념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가치관이 반영된 가족규칙은 일시적・단기적인 목표와 달리, 세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므로 '가정헌법'의 가족전체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전체 규칙의 대표적인 예는, "매일 열심히 생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가족은 항상 안아주고 뽀뽀해주기", "월요일 마다 가족회의인 가정의 밤에 모두 참여한다", "가족 서로 바른말 고운 말을 쓴다" 등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애정표현, 유대의식,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었다. 자주 등장하는 핵심어 또한 '즐거운/긍정적인 마음 가지기', '약속 지키기', '안아주기/사랑하기/뽀뽀하기' 등으로 나타났고 '가족 가치관 및 목표 공유', '감사와 애정표현・정서', '유대 의식', '가족원에 대한 존중', '긍정적인 의사소통' 등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는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집단의 존속과 기능 유지를 위한 결속력, 친밀감, 정서적 안정,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범주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족 가치관 및 목표 공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가족 이미지, 가족의 가치나 이념, 가족원간의 응집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가족원들의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는 응집성(cohesive)은 가족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분리(disengaged)나 속박(enmeshed)과 같은 역기능적 가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헌법'에 나타난 가족전체 규칙의 예로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가도 된다. 단 멀리가고 싶으면 너와 나 모두 함께 가야 한다"와 같이 '응집성'을 높이는 내용이 많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건강가정의 '우리'는 속박된 가족의 결과가 아니라 전체 안에 '나'와 '너'의 적절한 자율성과 개별성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 혹은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방적 경계를 가진 가족전체 규칙이 요구된다.

한편,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가족이 있다", "하루에 백번씩 안아주기", "가족구성원의 자유는 상대방의 코끝에서 끝난다"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실천이 어려운 규칙이 많았다. 모호한 규칙은 가족구성원이 규칙을 서로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며, 가족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가정헌법'의 세부조항은 '가정헌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전달체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전체 규칙은 개별 가족 특유의 가치와 문화, 규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기존의 부적절한 규칙을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인식 전환 및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부부규칙은 총 18개(1.0%)로 다른 하위체계 규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규칙을 제정할 때 부부적응을 위한 부부규칙보다 부모역할이나 자녀역할 제정에 더 중심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규칙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부부 간에 서로 존댓말로 대화 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서로를 안아 준다"처럼 부부간의 우애적 응집성을 표현하는 '존중' 및 '애정'과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핵심어는 '존댓말 하기', '존중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원에 대한 존중'과 '감사와 애정・정서'로 범주화 가능하다. 오늘날 부부 간 존중은 부부관계의 질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결혼연령 상승, 적은 수의 자녀 출산,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자녀양육기는 짧아지고 노인부부만 남는 '빈 둥지 시기'가 점차 길어지는 가족생활주기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Kim et al., 2003).

자녀는 부모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를 관찰・해석하고 내면화하여, 향후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Kang (2005)은 부부관계에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Chunningham & Thorntom(2006)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자기 부모들의 결혼을 근접해서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 인상에 의해서 결혼 이미지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즉 자녀가 관찰한 부모관계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가에 따라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규칙은 부부체계를 포함해서 가족전체 체계 내에서 포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규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아버지・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규칙은 각 69개(3.8%), 46개(2.5%), 42개(2.3%)로 전체 가족규칙의 8.6%인 총 157개로 빈도가 높지 않았다.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할

때 가족규칙은 체계 내의 관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양육과 훈육의 책임 주체자로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위계적 우위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부모가 지켜야할 규칙보다 자녀규칙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위계질서는 일방적인 권력행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돌보기 위한 자발적인 책임과 희생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부모자녀간의 위계는 체계유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Yoo et al, 2004: 134), 가족규칙의 위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등한 가족관계가 바탕이 된 부모규칙의 적절한 양적 구성이 요구된다.

부모규칙은 "자녀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준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욕하고 때리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화난 얼굴을 하지 않는다"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기타 "민주적인 가정을 만들자"처럼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가족관계 욕구를 반영한 규칙도 많았다. 부모규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핵심어는 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방법인 '경청'과 자녀훈육 방식인 '처벌 않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능력'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신뢰와 애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적응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Lee, 2011). 부모규칙은 대체로 부모 각자의 다짐에 의한 것이지만,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소통 및 훈육과 관련된 처벌금지 규칙이 많다는 것은 건강한 의사소통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지향하고 가족 변화에 대한 실천의지와 욕구를 반영하므로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 규칙은 획일적이고 암묵적 고정관념을 반영한 젠더 이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규칙은 "술 줄이기", "담배 끊기", "건강을 생각하며 일하기"로 대표되며, 핵심어 또한 술, 담배, 운동, 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는 '역할충실'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사랑의 뽀뽀를 해주자", "가족 행복에 힘쓰자", "가족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식사는 매일 내손으로 준비하자"와 같이 가족의 친밀성 도모 혹은 음식과 관련된 내용 위주이며, '감사와 애정・정서', '유대의식', '역할충실'로 범주화 된다.

아버지 규칙은 한국 사회 남성문화 반영과 함께 생계책임자의 역할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머니의 규칙은 전형적인 주부역할로서 가족 내 정서적 친밀감이나 돌봄의 역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한 성역할 구분규칙은 아버지에게 가족부양 역할 책임을, 어머니에게는 가사일과 자녀 돌봄 역할 책임을 부여한다.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고려할 때, 직업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나타나는 역할과중 현상은 역할긴장을 유발하고 가족 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규칙연쇄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성차를 구분 짓는 규칙형태는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성역할에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칙 제정과 관련된 가족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가족규칙의 하위체계별 규칙의 빈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녀규칙의 양적인 측면이다. 자녀규칙은 총 576개(32.0%)로 부모규칙보다 약 3.6배 더 많았다. 이는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영향력을 반영하는데, 부모로서의 역할수행 기능과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부모는 가족 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수행을 하게 되는데(Abbott, 1999),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자녀와 관련된 많은 규칙을 규정하고 활용하고 있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규칙이라는 말로 분명하거나 암시적인 방법으로 요구하며, 자녀는 부모나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에 맞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Chung, 2003).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역할기대와 자녀의 사회화 맥락에서 자녀규칙의 빈도분포가 가족전체 규칙을 제외한 다른 하위체계 규칙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자녀가 수행해야할 규칙은 자녀의 성장경험과 정서안정, 삶에 대한 대처방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므로 자녀규칙은 어떠한 규칙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규칙의 대표적인 예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안마하기", "부모님께 효도를 하루에 세 번하자", "잠은 같은 시간에 자기", "TV와 게임기는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한다", "속이려 하지 않는다", "못난 행동・표정・언어는 절대 하지 않는다", "징징대지 않기" 등으로 규칙의 형태가 지시적이고 일방적이며, 행동의 경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 가족 내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위계규칙이 많았고 특히 감정규칙에 있어서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규칙이 많았는데, 다수의 감정억제 규칙은 자녀에게 정서적 단절을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정서적 단절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Lee, 2002).

자녀규칙의 핵심어는 '말씀 잘 듣기', '인사 잘하기', '공경하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편식 안하기', '양치질하기', '컴퓨터와 TV, 정해진 시간만 하기', '맡은 일에 충실하기', '최선 다하기', '숙제하기', '책 읽기', '학원 잘 다니기', 형제자매간 '다투지 않기', '양보하기' 등이다. 이러한 핵심어들은 효・웃어른 공경과 취침, 식사, 컴퓨터 등의 생활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가족가치관・목표공유'와 학원, 숙제, 독서 등의 '역할충실'로 범주화 된다. 이는 Hombeck & Hill(1991)의 부모들이 개인적인 습관과 가족 내에서의 책임감에 관한 규칙을 청소년에게 더 강조하고 있음을(Abbutt, 1999 quote again)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규칙은 처벌에 관한 규칙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

다. "거짓말을 했을 때 저녁 설거지를 2주 동안 하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었을 때 내 방 청소 1주 동안 하기", "싸웠을 때 2주간 컴퓨터 금지", "헌법 어길 시에 벽보고 30분간 반성" 등이 그 예로, 처벌 강도의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실천이 쉽지 않은 규칙 설정은 규칙 실천의 연속적 실패를 야기하고 처벌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규칙연쇄로 인해서,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연속적 실패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필수적으로 재능이 부족한 것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 두드러질 수 있다(Rosenberg, 1985).

자녀규칙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은 어떠한 규칙을 실행해야하는 실행규칙과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한 위반규칙 위주로 구성되었다. 이는 지시적・일방적・처벌적 규칙 빈도가 높은 경직되고 모호한 규칙형태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 행동의 경계를 폐쇄적으로 규제하고 자녀 역할의 기대 및 가치 수행을 위한 도구로 규칙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Kim(2003)은 가족규칙의 경직성 수준이 높은 가족은 중간 수준의 가족규칙을 가지고 있는 가족보다 아동의 우울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융통성이 없는 자녀규칙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가족체계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한 가족생활은 민주적인 상호 존중의 가족문화 속에서 창출된다고 볼 때 자녀대상 규칙이 지시・일방・처벌 위주로 기술 될 경우 부적절한 가족규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외규칙의 포함과 함께 '가정헌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자녀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그 세부조항이 실천 가능하고 개방적인가, 또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녀규칙의 역기능성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부모가 지켜야할 규칙은 단 1개에 불과하였다. 이는 핵가족 위주인 현대의 가족구조에서 조부모에 대한 가족경계 모호성과 가족 단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가족체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즉 가족구조가 확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친족관계와 사회조직망으로부터 절연되었고 핵가족 내부의 인간관계로만 상호작용이 국한되면서 가족은 하나의 고립된 단위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Yoo et al, 2004: 107).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결속을 통한 사회적 지지는 상보적・호혜적 관계형성과 정서안정성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지므로, 조부모를 의미 있는 가족체계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부모의 실천규칙은 "할머니의 약속 :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 양을 줄인다" 이다. 그 외 대부분의 조부모 규칙은 "조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꼭 하자", "민아와 민건이는 할머니 말씀을 존중하기", "부모님께 얼굴 보여주기" 등과 같이, 조부모가 실천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조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구성원이 지켜야할 내용 위주로 구성되었다. 즉 조부모는 가족과 함께 가족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실천적 주체가 아닌 공경 의무 대상으로만 나타났다. 조부모(할머니)가 실천해야하는 규칙의 형태는 가족건강을 위한 가사일 수행자인 전통적 성역할 규칙으로, 성역할 분담 측면에서 어머니규칙과 일치하였다.

2. 가족이 인식하고 있는 건강가정요소는 무엇이며, 하위체계별 규칙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가

가족규칙에 나타난 가족의 건강가족 특성인 건강가정요소의 인식정도를 살펴보았다. '가정헌법'의 1,803개 세부조항 전체를 건강가정요소 별로 살펴보면 '가치관・목표공유'가 590개(33.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역할충실' 254개(14.1%), '감사와 애정・정서' 236개(13.1%), '유대의식' 227개(12.6%), '긍정적인 의사소통' 196개(10.7%), '가족원에 대한 존중' 167개(9.2%), '문제해결능력' 81개(4.4%), '경제적 안정과 협력' 30개(1.6%), '가족・사회와의 유대' 22개(1.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은 <Table 5>와 같으며, 요소별 가족 하위체계 규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가정요소 빈도분포의 의미 있는 특징은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이다. 가족체계의 하위체계별 규칙 분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 11개 센터의 개별 '가정헌법'에서도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었다.[2)]

이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집단의 가치체계 공유의 강한 욕구 및 가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의 반영, 외부환경과 가족환경의 차별화 전략에 의한 가족가치 전체성을 의미하며, 가족행동체계인 가족규칙이 개인적 가치에 폐쇄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폐쇄적 규칙체계는 가족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 가족규칙의 변화와 수정을 어렵게 만들어서 가족기능과 가족건강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즉 가치 공유를 통한 가족의 정서적 결합이 지나치게 높은 응집성 추구로 인해서 가족역할과 규칙의 변화를 허용하는 적응성(adaptability)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의 높은 빈도분포는 규칙형태로 살펴본 자녀규칙에서 동일 요소의 높은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 예로 자녀가 지켜야할 규칙에는

2) 각 센터 '가정헌법'은 양적 차이가 크므로, 센터별 건강가정요소 도출 빈도분포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Table 5. Health Family Element in 'Family Constitution'

Recognition level	Health family element	Frequency (%)
1	sharing values · goals	590 (33.1)
2	faithful to one's role	254 (14.1)
3	appreciation, affection · emotion	236 (13.1)
4	fellowship	227 (12.6)
5	positive communication	196 (10.7)
6	respect to family	167 (9.2)
7	problem solving ability	81 (4.4)
8	financial stability and cooperation	30 (1.6)
9	bond between family and society	22 (1.2)
	Total	1,803 (100)

'가치관 및 목표 공유'의 세부내용에 포함되는 생활 태도 및 습관에 대한 규칙과 효 · 웃어른 공경에 대한 규칙이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헌법'의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에 나타난 가족규칙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전체성과 자녀에게 부여되는 통제성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가족의 특성인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가 가족의 특정 하위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규제하는 규칙을 가족가치와 목표로 변질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규칙을 수행하는 자녀는 우울 ·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족규칙의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는 개인적 가치와 가족가치의 관계적 비교에서 공평성을 가져야 건강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인식정도가 비교적 상위로 나타난 요소는 '역할충실', '감사와 애정 · 정서', '유대의식' 요소이다. '역할충실' 요소는 가족 내 역할지위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에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자녀규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Yoo(2004)는 가족원의 '역할충실' 요소는 미국과 호주가족 보다 한국가족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특성으로, 이는 가족 내의 역할 및 권력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권위적 ·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역할책임이 강조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녀규칙의 높은 '역할충실' 빈도는 역할 고정성이 강한 성인보다 역할수용단계인 자녀의 생애주기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기 경험이 중요한 자녀는 역할수용보다는 역할획득과정이 더 중요하므로 성공적인 역할수용을 위하여 역할에 대한 만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건강한 규칙 제정을 위해서 자녀의 '역할충실' 규칙에는 자주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을 기반으로 한 아버지, 어머니 규칙에는 사회와 가족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감사와 애정 · 정서' 요소는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부부, 부모, 어머니, 자녀대상 규칙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건강가족의 특성에서 사랑과 애정은 가족원의 전인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성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버지규칙의 '감사와 애정 · 정서' 요소는 아버지의 또 다른 역할지위인 부모규칙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유대의식' 요소는 소속감, 연대감, 협동과 여가시간의 공유와 관련된 요소로 가족구성원, 아버지, 어머니대상 규칙에서 '가족모임 및 함께하는 것', '자녀와 놀아주기',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위한 노력'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여가시간과 가족자원관리에서 주체적 역할수행이 어려운 자녀는 다른 하위체계 규칙에 종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긍정적 의사소통'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존중' 요소는 건강가족 특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가족의 인식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의사소통'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질적 상호작용 요소로 대부분 가족구성원, 부모대상 규칙에 분포되었다. 이는 가족체계 전반에 걸쳐서 열린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부모는 자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rk(2006)은 가족원들은 상대에게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인식하지만 내면과 일치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개인적인 감정 등을 드러내

거나 의사결정 시 평등한 관계수립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은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질을 반영하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에 대한 융통성을 향상시키므로 가족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지지 및 신뢰 요소로 가족구성원, 부부대상 규칙 위주로 나타났다. '존중'은 가족건강성 향상에 필수적 요소로 가족 하위체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가족건강성 하위요인 가운데 '가족원에 대한 존중'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Byun, 2009), 건강한 부부관계는 '존중'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므로(Hyun, 2012) '가족구성에 대한 존중' 요소와 관련한 가족 인식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가정요소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 요소는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요소는 Yoo(2004)의 연구에서 한국가족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건강가족 특성과 일치한다. 가족 하위체계별로 관련 요소 분포는 '문제해결능력' 요소는 부모규칙 위주이며,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 요소는 하위체계별 인식정도가 10% 내외 혹은 인식하지 못한 요소로 나타났다.

각 요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 요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원들이 한 마음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가족의 응집력을 나타내고(Olson & DeFrain, 1994), 갈등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가족역량을 의미한다. 가족갈등은 가족체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와 지속적인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의해서 가족관계 이면에 항상 잠재되어 있다. 또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직장의 일에 대한 역할과 가정의 역할이 상호 충돌할 때 발생하는 일-가족 갈등(Byron, 2005; Greenhaus & Beutell, 1985)이 가족갈등과 스트레스로 새롭게 전환되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갈등은 보편적・일상적이고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하므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가족갈등을 억압, 회피, 위계적 권위, 암묵적 가족규칙 등으로 갈등원인을 통제하는 것은 경직된 가족체계를 형성하고 가족갈등의 확대 재생산 및 갈등해소를 위한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가족갈등은 자주 표면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때, 갈등 합의가 유연해지면서 가족체계의 균형유지에 오히려 기능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인식 향상이 요구된다.

'경제적 안정과 협력'은 가족원의 소비생활 및 태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관계 정도가 높으므로(Yang, 2001), 안정적인 의식주생활을 위한 재정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문제는 가족갈등을 유발하고 가족의 기본적인 발달과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가족체계는 상호의존하고 기능하는 관계로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인식 공유와 소비의 합리적인 기준 합의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사회와의 유대'는 이웃과의 관계와 사회에 대한 관심 및 봉사활동 참여와 관련된 요소이다.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은 참여 유무에 따라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있으며(Kim & Jang, 2003; Lee, 2003; Kim, 2003),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는 질적인 경험 공유 증가로 관계증진과 세대결속 및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가족・사회와의 유대' 요소는 건강가족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개인적 차원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인 관계적 차원 그리고 가족체계와 사회・국가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체계적 차원 모두를 포함하는 매우 기능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때 가족건강성 향상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족・사회와의 유대' 요소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동기부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정헌법'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가족규칙의 하위체계별 규칙 빈도와 내용적 속성의 유기적 관계성, 건강가족 특성 인식정도와 가족 하위체계별 규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규칙의 기능적 특성과 건강성에 대해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헌법'에 나타난 가족규칙의 기능적 특성은 총체적으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능적 규칙보다는 경직되고 모호하며 폐쇄적인 역기능적 규칙에 더 근접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가족전체에 해당하는 규칙은, 내용은 다양하지만 가족집단가치를 강조하는 속박된 응집성 및 규칙의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가족집단가치의 지나친 강조는 실천적 규범보다는 상징적・추상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족규칙을 제정하게 만든다. 가족친화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때 자칫 가족의 응집력과 결속력만을 강조하여 가족체계 내 경계를 폐쇄적으로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가족친화문화조성이라는 결과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가족규칙의 '개방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부규칙의 특징은 '애정', '존중'의 우애적 관계가 강조된 제한적인 규칙으로 부부관계의 불일치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과 관련된 규칙이 부족하였다. 이는 부부적응 증진에 대한 미온

적인 대처와 문제 회피 또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없거나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규칙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 가족관계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고 '가장'과 '주부'라는 이분화적 성역할 수행의 아버지・어머니 규칙은 역할관계규칙에서 경계가 경직된 역기능적 규칙이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한 가정문화 확립 취지에 장애가 되는 규칙이다.

부모규칙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규칙은 대부분 지시적・일방적・처벌적인 경직된 규칙이라는 점에서 자녀양육과 훈육을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은 자녀의 안전 및 보호, 사회화 등을 제공하고 훈육은 자녀의 행동과 관련된 적절한 통제 및 지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동기가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헌법'의 자녀규칙은 양방향성에 대한 경계 혼란 및 역기능적 규칙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부모규칙에서 발견되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민주적 가족관계 욕구와 상치되는 것으로, 그 원인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참여가족의 생애주기가 대부분 학동전기와 학동기 가족에 치중된 것과 관계가 있다. 즉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녀 통제 규정이 명시적 규칙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역할자로서 수행해야할 규칙이 단 1개에 불과했던 조부모규칙은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핵가족에 국한되어 있거나, 조부모에 대한 가족경계 모호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공동체 문화 창조'라는 '가정헌법' 사업목표와 부합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가정요소에 대한 인식정도는 상위수준의 인식요소와 하위수준 인식 요소 사이의 빈도편차가 매우 컸으며, 이는 건강가정요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각 요소의 본질적 속성이 질적으로 동일함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족규칙에 나타난 건강가정요소 인식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치관・목표공유' 요소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역할충실', '감사와 애정・정서', '유대의식', '긍정적 의사소통', '가족원에 대한 존중' 요소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는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가치관・목표공유' 요소는 자녀 생활태도와 관련한 통제성 및 가족가치를 추구하는 전체성의 혼재를 보였다. 이는 '가족 가치관 및 목표 공유' 요소 본질에 대한 해석이 왜곡될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즉 '가치관・목표공유' 요소의 세부내용인 효・공경 가치 및 삶과 일상적 태도 가치를 가족 전체가 공유해야할 가치로 분류하지 않고 자녀규칙의 통제 규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오류는 '가정헌법' 제정 과정에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주 발생 가능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적 측면이 가족가치의 구속 연쇄로 인하여 그 고유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인식정도가 상위수준인 '역할충실' 요소는 가족 하위체계 내 기존의 역할분담 및 수행에 있어서 경직된 아버지・어머니의 성역할 수행규칙과 자녀규칙을 암묵적인 규칙에서 명시적인 규칙으로 전환시키려는 욕구가 가시화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 하위체계 내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사회와의 유대' 요소에 대한 인식 부족은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에 취약할 수 있으며, 주기적인 가족 위기 상황도래 및 가족기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이 속하는 건강문화사업은 그 정체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 담당자조차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Park, 2008) 실정으로, '가정헌법'의 제정 목적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 즉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은 실무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전달체계 구축과 사전교육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황적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통으로 진행하는 공동의 목표・목적이 있는 사업이므로, 상부기관을 구심점으로 실무자의 안내지침, 유인물, 관련 영상 등과 같은 의미전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무자 대상 사전교육을 통해서 사업의 질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건강가정사업의 일차적 목표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고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근간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이므로, 건강가족의 특성인 건강가정요소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선 '가정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건강가족진단지를 활용하여 가족의 건강한 의식 정도 및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과 평가 단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가족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진단결과에 따른 전문가의 개선방안 및 조정방안을 제시하여 참여 가족에게 건강가정요소의 질적 동일성 내재화 및 실천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자녀와 관련된 '가정헌법'이 기능적 규칙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부모역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부모자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와 관련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참여한 가족의 주기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규칙의 특수성과 적절성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의 긍정적・부정적 사례 공유 및 참고할 수 있는 지침 제공과 제정된 '가정헌법'에 대한 평가 및 환류라는 실무자의 점검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문화사업은 소수의 실무자로 운영되고 업무 과다로 인하여(Park, 2008), 적극적인 실무자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실무자의 개입이 용이한 7~10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대상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시적・홍보적・행사적 특성인 건강가정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하는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을 지양해야할 것이다. 건강가정캠페인은 일정한 교육장이 아닌 거리 행사 혹은 유관기관 행사연계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사업으로 실무자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가정헌법'에 대한 사전 지식과 정보 제공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의 참여 독려는 무분별한 가족규칙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의 '가정헌법'은 가족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헌법' 제정 이전에 가족의 내적 성숙도 향상 및 가족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족규칙의 유용성과 실질적인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가정헌법 만들기' 사업은 가족친화문화사업 형태로 단독 진행하기 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성기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주기와 관련된 부부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사업과 연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사업은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가정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Jeong, Park, & Song, 2011).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목표달성의 구체적 방안 모색에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 지역에 한정된 '가정헌법'만을 분석한 점, 그리고 참여 가족의 사회경제적・인구사회학적 변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의 확대와 사업에 대한 실무자 평가 그리고 참여가족의 만족도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김승권 외(2003).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유숙(2003).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법무부(2011). 행복해요 가정헌법, 함께해요 학급헌법. 가정・학급 헌법 홍보자료.

송성자(1998). **가족과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정문자(2003). **Satir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2007).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정영금・강기정・박정윤・정지영・조성은(2008). 가정경영 아카데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조희금・정영금・민하영・서지원・이재림(2010). 가족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단과 과제. 2010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9). 가정헌법 만들기 운영 매뉴얼.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2). 운영가이드북.

한국버지니아사티어 연구회 역(2000).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 편.

Abbott, C. B.(1999). *Family members' conceptions of family ru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Utah.

Byron, K.(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169-198.

Byun, J.(2009).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self-esteem and subjective well-bing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sangnam-do.

Cha, S.(2012). A LETS(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 policy proposal for revitalizing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family-cooperative activities(pumasi) project.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67-82.

Cho, S.(2005). *Analysis of needs for counselling among the early stage of marital couples: focused on the traits of family of origin and confli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Choi, H. & Yoo, Y.(2003).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functioning sca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30),* 15-28.

Chung, Y. & Choi, J.(2010).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married women's marital adjustment and perspective toward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5(3),* 331-353.

Cunnungham, M. & Thorton, A.(2006).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adult childr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its alternatives: main and moderating effects. *Demography, 43(4),* 659-672.

Eo, E. & Yoo, Y.(199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cale for measuring family strengh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3(10),* 145-156.

Greenhaus, J. H. & Beutell, N. J.(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76-88.

Havestsdt et al.(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Hyun, I.(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congr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rules and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Jang, Y.(2004). *Connection among inflexibility of family rule, self-concept of perceived influ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the influence of family ru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Jeong, Y., Park, J., & Song, H.(2011). A study on development of evaluation scale for health-grade of famil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5(1),* 177-197.

Kang, Y.(2005). A study on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marital quality of married men and wom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3(6),* 155-165.

Kim, H.(2007).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rule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im, J. & Jang, D.(2003). A study on development of family volunteering program strengthening the family health.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3),* 111-135.

Kim, M.(2002). *The effect of family volunteering program involved in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on the family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Gyeonggi-do.

Lee, J.(2012).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married women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family of origin and family strength-focused on family differentiation and the family rul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1(2),* 181-195.

Lee, K.(2003). Family volunteering and the family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2,* 63-87.

Lee, S. & Yoon, S.(2009).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family leisure cultural program-focused 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seocho-gu. *Korean Society for Wellness, 4(2),* 1-12.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Nichols, M. P. & Schwartz, R. C.(2002). **가족치료-개념과 방법**. 김영애 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Olson, D. H. &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Park, G.(2009). *A study on marital communication and family rules in family of origin through mothers'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

Park, J. & Yoon, S.(2010).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activity of family voluntary service group and healthy family campaign in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2),* 59-77.

Park, J.(2008). The study of culture program evaluation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26(3),* 25-36.

Park, M.(2006). *The effects of differentiation, family rules of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ommunication on couples' marital intim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Park, S.(2006). *A study on family strengths and its policies-focused on family concept and functions perceiv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Rosenberg, M.(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k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Satir, V.(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Satir, V.(1988). *New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Song, H. & Jeong, Y.(2008). The evaluation and alternatives on the educational work in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1),* 1-20.

Song, H., Kim, Y., & Cho, Y.(2012). Performance analysis of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ilot project to support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3), 83-107.

Stinnett, N., Chesser, B., & DeFrain, J(eds.).(1979). Building family strengths: Blueprints for action.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Yang, J. & Kim, S.(2010). A study on the use of health family support centers and Its activation plan-focused to gyeonggi-do.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213-237.

Yang, O.(2001). Study on development of the family relationship sca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99-147.

Yoo, G.(2004). A survey on the elements of strong families-focusing on the systems and family strength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25-42.

Yoo, Y.(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amily strengths scale for strengthening the fami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9(2),* 119-151.

□ 접 수 일 : 2013년 01월 18일
□ 심 사 일 : 2013년 02월 1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01일